

강사수당 지급기준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지급기준(만원)		적용대상(청탁금지법 적용 유무로 구분)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일반	공직자 등
특1급	40	3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 대기업 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급) · 국회의원*
	(이동시간보상 30)			
특2급	30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차관(급) · 전직 공기업 대표 ·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 기초자치단체장 · 공직유관단체장
	(이동시간보상 20)			
1급	2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기술사, 세무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취미·소양·외국어·전산 강사 제외) · 국가대표 지도자 및 국가대표 출신 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급 이상 공무원 · 지방의회의원 · 대학의 교수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 언론인
	(이동시간보상 12)			
2급	1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체육지도사 1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교과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급 이하 공무원 · 대학의 강사 등 · 공직유관단체 직원
	(이동시간보상 8)			
3급	10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외부 경력 포함) 강의 경력자 	
	(이동시간보상 5)			
4급	8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이동시간보상 4)			
5급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이동시간보상 3)			

나. 이동시간 보상수당 지급기준 (출강하지 않고 재택 강의 시 수당 미지급)

권역	지역 구분	지급 여부
1권역	대전, 세종,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양산, 밀양, 김해, 창원, 창녕, 합천, 거창, 함양, 함안), 강원(삼척, 동해, 태백, 강릉, 원주, 영월, 횡성)	미지급
2권역	서울, 인천, 경기, 제주, 충남, 광주, 전북, 전남, 경남(1권역 이외 지역), 강원(1권역 이외 지역)	지급